



평택 100년 대토론회 자료집

- 평택 1914를 말하다

- 기초발제 : 1914년 평택 행정구역개편 과정과 시·공간적 의미
- 대토론회 : 평택 100년의 정체성과 미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강당(1층)



평택문화원



평택 100년 대토론회

- 평택 1914를 말하다

- 기초발제 : 1914년 평택 행정구역개편 과정과 시·공간적 의미
- 대토론회 : 평택 100년의 정체성과 미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강당(1층)



평택문화원

진행순서

○ 의식행사

사회 - 오민영(평택문화원 사무국장)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 평택문화원장

축사 - 지역사회 각계인사

○ 기조발제

주제 - 1914년 평택 행정구역개편 그 의미

발제자 - 최재성(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대토론회

토론사회 - 박성복(평택문화원 이사)

주제 - 평택 100년의 정체성과 미래

토론자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김해규(한광중학교 역사교사)

박호림(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윤현수(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센터 교육처장)

이은우(평택사회경제발전소 대표)

○ 시민토론

○ 폐회

1914년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그 의미

최재성(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의미

최재성(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 1-1. 행정구역 개편 발표
- 1-2. 조선인의 반응
- 2-1. 도(道)
- 2-2. 부제(府制) 시행
- 2-3. 군 통폐합
- 2-4. 면의 통폐합
- 2-5. 정·동·리 통폐합
- 3-1. 개편의 결과
- 3-2. 의미: 지방 장악
- 4-1. 1914년 평택지역 행정구역 개편
- 4-2. 1914년 이전 평택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 4-3. 이후
- 4-4. 1920년대 경기도 내 진위군의 위상(郡勢)

1-1. 행정구역 개편 발표

발표: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호외

그 무렵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1913년 12월 4, 5일경 총독부로부터 각도에 그 준비에 대한 훈령을 발하고, 24, 5일경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2월 20일경으로 앞당겼다가 연막전술로 이듬해 봄으로 늦추었다. 그후 언제라도 발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여 반응을 살핀 다음 12월 29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시행일

- 부제: 1914년 4월 1일
- 군 통폐합: 1914년 3월 1일
- 면 통폐합: 1914년 4월 1일

1-2. 조선인의 반응

…但 二三地方은今回 改正에 對하야 不平의 誤解를 抱하고 委員을 派送하야 當局에 陳情함이 有한지라

其 誤解의 根因을 察하건디 地理의 關係와 事勢의 輕重은 不知하고 或은 此地方은 大하고 彼地方은 小하거늘 엇지 此를 彼에 合하노호며 或은 我郡은 郡守가 無하야 調査當時에 一分의 運動이 無하얏다 하며 或은 郡參事 等を 埋怨하되 彼는 郡의 大小事를 必先知하리니 府郡廢合議가 發生할 時에 敏速히 運動하야 此를 取消치 못함으로 由하얏다 하야 巷論이 不一하나 此는 沒常識에서 出함이라…(《매일신보》 1914년 1월 21일 사설(1면))

…今回 府郡廢合에도 沒常識한 者는 或 官吏의 蔑力을 怨하야 既히 發表한 命令을 取消코져 하야 運動을 試함도 有하니 全道에 亘하야 至公無私로 一時에 斷行하는 事業을 一二郡을 爲하야 變更이 有할까…(《매일신보》 1914년 2월 1일(사설))

위 기사에 소개된 지방민들은 군수가 무능하여 총독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군이 폐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정위원을 파견하였다. 군 폐합 반대운동에 나선 자들은 자기 고장의 관리가 무능하여 폐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운동을 나선 이유는 부군폐합의 결과 군아 소재지의 이동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의 군 폐합 반대운동에 대해 총독부에서는 지방행정 및 경제교통과 역사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것이며 13도 전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2, 3지방의 진정이나 운동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이들 진정위원들은 총독부의 설득에 굴복하였다.

2-1. 도(道)

- 13도제 유지
- 도 경계 재조정

먼저 한 개 군의 소속이 다른 도의 관할구역으로 넘어간 경우인데, 충남 평택군 일원(3개 면)이 경기도 진위군에 편입되었고, 경남의 울도군(울릉도)이 경북 관할로 바뀌었다.

다음으로는 한 개 군의 일부 지역이 다른 도의 관할 구역으로 넘어간 경우인데,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사이에 이루어진 소규모 지역이동이다. 경기도 삭녕군의 3개면(乃文·寅日·馬場面)이 강원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매일신보》 1914년 3월 15일(2면) ‘경기의 면폐합’). 또한 충북 음성군의 범왕면 석원리 일부와 두의면 용산리가 경기도 이천군에 소속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음죽군 동면 노평리 일부와 하울면 총곡리 일부, 상울면 팔성리 일부, 석교천 일부가 충북 음성군에, 죽산군 남면 가척리와 동주리가 충북 진천군에 편입되었다

또한 전남의 고군산군도(古群山羣島)와 충남의 개야도(開也島)·죽도(竹島)·연도(煙島)·어청도(於靑島) 등이 새로 전북 관할로 편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천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한 사례이다. 평북 박천군 덕안면·박비리·중흥리 및 영변군 독산면·귀봉리·남평리 가운데 청천강 남안에 접한 도서지역이 평남 안주군에 속하게 되었고, 평남 안주군 청산면·여북리·원흥리·원일리·운학리 가운데 청천강 북안에 접한 지역이 평북 박천군에, 평남 안주군 주북면 차장리 가운데 청천강 북안에 접한 도서지역이 평북 영변군에 속하게 되었다.

2-2. 부제(府制) 시행

府制는 지방행정구역의 정리를 행함과 동시에 종래의 거류지제도 및 거류민단체도를 철폐하고 외국거류지는 모두 이를 지방행정구역인 府에 편입하는 조치로 종래 일반지방행정과는 별도로 그 구역내의 공공사무를 취급했던 각국 거류지회·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를 폐지하고, 그 사무 가운데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에, 기타는 淸國專管租界의 행정사무와 합하여 부에 인계한 것이었다.

부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에는 ‘군’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엔 별 의미가 없었던 ‘부’명칭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총독부의 설명에 따르면, 부란 공공사

업을 영위하고 예산과 조례에 관하여 부윤이 권한을 갖는 재정단체라는 것이다.

부제의 실시와 함께 부 구역의 범위는 종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의 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12개였다. 부의 구역은 민단폐지와 함께 이를 축소하여 시가지 및 장래 시가지에 편입할 토지로써 그 구역을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접 군에 속하게 하였는데, 12개 부의 이름과 그 관할구역은 <표1>과 같다.

<표1> 부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명	관할 구역
경성부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서부의 일부, 용산면의 일부, 송신면의 일부, 인창면의 일부, 한지면의 일부, 두모면의 일부
인천부	인천부 각국거류지, 구일본 거류지, 지나거류지 일원, 부내면, 다소면의 화도동, 수유동, 신촌리, 송림동, 송현동, 장천리의 일부, 독각리의 일부
군산부	각국거류지 일원, 북면의 장재동, 대정동, 송창동, 개복동, 신흥동, 명치정통, 흥전정, 강호정, 노정, 영정
목포부	각국거류지 일원, 부내면의 양동, 신창동, 연치동의 일부, 남교동의 일부, 북교동의 일부, 죽동의 일부, 온금동의 일부
대구부	대구면(신천동, 남산동의 일부, 신동의 일부 제외) 일원
부산부	구일본거류지 및 지나거류지 일원, 부산면, 사중면, 사하면의 부민동, 대신동, 부평동, 대치동의 일부, 용주면의 당감동 일부
마산부	각국거류지 일원, 외서면의 완월리, 신월리, 월영리, 자산리, 서성리, 성호리, 중성리, 성산리, 동성리, 오산리, 상남리, 교방리의 일부
평양부	용덕면, 대흥면(능라 제외), 내천면(서월동 일부, 신양동 일부, 강촌동 일부 제외) 외천면(양각동, 사리명촌동 일부 제외), 임원면의 기림동 일부
진남포부	각국 거류지 일원, 원당면의 비석동, 신흥동, 지산동, 용정동, 후포동, 억양기, 하대리의 일부, 상대리의 일부, 마산리의 일부
신의주부	의주부 광성면의 빈정, 대화정, 본정, 옥정, 상반정, 앵정, 영정, 진사정, 노송정, 운정정, 매지정, 약죽정, 초음정, 하정, 녹정, 압천정
원산부	구일본거류지, 지나거류지 일원, 현면의 명석원, 석우동, 용동, 상리1동, 상동, 상리2동, 상신흥리, 하신흥리, 광석동, 산제동, 남촌, 북촌, 남산동, 교하동, 중리1동, 중리2동, 3동, 4동, 장촌, 신촌,

	하촌, 포하리, 중청리, 적전면의 관교동, 와우동의 일부
청진부	청진부 청하면의 청진동, 신암동의 일부

이 표를 보면, 12개의 부는 그 관할 지역을 축소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다만 의주부는 폐지되고 신의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성부는 동·남·북·중 등 4部를 중심으로 하고 서부의 일부, 용산면의 일부, 송신면의 일부, 인창면의 일부, 漢芝面의 일부, 豆毛面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또한 평양부는 부근 5면 및 일본인거류지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부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지역이었고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면 지역은 군의 관할로 하였다.

2-3. 군 통폐합

기존에 있던 부와 군은 그 관할구역의 넓이가 일정치 못하여 군 가운데 큰 것은 5백 방리 이상에 달하여 한 道의 면적에 필적할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은 겨우 3 방리에 달하여 규모가 큰 면의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편차가 극히 컸다.

방리(方里)란 일본의 면적단위로 1 방리는 사방 1리 즉, 가로·세로 1리를 말한다. 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에 해당하여 1 방리는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15.423km² (3.92727km×3.92727km)의 넓이다(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갑오경장~일제강점기—), 일지사, 1992, 156쪽 각주 112 참조).

또 가구수의 편차도 커서 인구가 많은 군의 가구수는 2만 8천여 호에 달한 반면, 인구가 적은 군의 가구수는 1천 3백여 호에 불과했다. 또한 그 경계는 극히 錯綜하고 ‘甲郡의 地域이 乙郡에 飛入하거나 又は 突入한 者 有하며 혹은 簷下로써 境域을 作한 者 有’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犬牙錯綜)’하고 ‘飛入·突入’한 경계를 정리한다는 방침은 이후 면의 통폐합에서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면적 약 40 방리 및 가구수 약 1만 호로써 표준을 삼아 표준 이하의 면적 또는 호수의 군은 폐합하고 표준 이상의 군은 존치시킬 방침을 정했다. 또한 영역이 축소된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신설된 군도 있었다.

먼저 신설된 군을 보면, 경기 부천, 충남 대전·논산·홍성군, 전북 옥구군, 전남 무안·화순·고흥군, 경북 달성·영일·김천·영주군, 경남 동래·통영·창원군, 황해 연백군, 평남의 대동·평원군, 평북의 의주군, 함남의 덕원·신흥·풍산군, 함북의 부령군 23개 군이다. 이 가운데 부천·옥구·무안·달성·동래·창원·대동·의주·덕원·

부령군 등은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신설된 군들이다. 12개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한 군의 명칭, 군청소재지, 관할구역은 <표2>와 같다.

<표2> 부 인근 12개 군 및 관할구역

군명	위치	관할구역
고양군	경성	고양군 일원, 경성부 서강면, 은평면, 연희면 및 西部·용산면·송신면·인창면·한지면·두모면 중 경성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양주군 고양주면
부천군	관청리	부평군 일원, 인천부 구읍면, 서면, 남촌면, 오동면, 신현면, 전반면, 황동천면, 주안면, 영종면, 용유면, 덕적면, 다소면 중 인천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강화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남양군 영흥면, 대부분
옥구군	군산	군산부 탁면, 풍면, 장면, 동면, 서면, 정면, 미면, 북면의 군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임피군(동일면의 방교리 제외)의 일원, 함열군 남이면의 마포리, 상검리, 하검리, 전남 지도군 고군산면
무안군	목포	목포 삼향면, 일로면, 이로면, 박곡면, 일서면, 이서면, 석진면, 외읍면, 현화면, 다경면, 망운면, 해제면, 진하산면, 부내면 중 목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지도군(고군산면 위도면 낙월면 제외) 일원, 완도군 팔금면, 진도군 도초면
달성군	대구	대구부 동중면, 동하면, 해동촌면, 해서부면, 해서촌면, 해북촌면, 수동면, 수북면, 수현내면, 상수남면, 하수남면, 서중면, 원서면, 성서면, 하동면, 하남면, 하서면, 하북면, 감물천면, 조암면, 인흥면, 화현내면, 월배면, 옥포면, 범화면, 성평곡면, 대구면 중 대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동래군	동래	부산부 읍내면, 동상면, 동하면, 북면, 서상면, 서하면, 남면, 동평군, 사상면, 좌이면, 사하면 및 용주면 중 부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기장면 일원
창원군	마산	마산부 부내면, 상남면, 하남면, 동면, 북면, 내서면, 귀산면, 대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서면, 양전면, 응읍면, 응동면, 천가면, 진해면, 응서면, 외서면 중 마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대동군	평양	평양부 청룡면, 용연면, 고순화면, 서천면, 용악면, 석관면(적선동 제외), 추을미면, 남계산면(송오동 제외), 남형계산면, 평천면, 대보면, 시족면, 재경리면, 금여대면(문필동, 연

		곡동, 대마동, 가장동, 금여동, 원동 제외), 용산면, 부산면, 대동강면, 서제산면, 율리면, 임원면, 외천면, 내천면, 대흥면 중 평양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용강군	용강	진남포부 동리면, 서리면, 금당면, 오은면, 감박면, 초소면, 귀상면, 귀하면, 내곡면, 신북면, 신남면, 대하면, 대상면, 원당면 중 진남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의주군	의주	의주부 위화면, 주내면, 수진면, 가산면, 광평면, 옥상면, 고영삭면, 소관면, 고군면, 월화면, 비현면, 위원면, 관리면, 송장면, 고성면, 고읍면, 진리면, 광성면 중 신의주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덕원군	덕원	원산부 부내면, 북면, 주북면, 용성면, 적전면, 현면 중 원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안변군 영풍면, 하도면 중 여도, 고원군 하발면의 용도
부령군	부령	청진부 청상면, 연천면, 동면, 판장면, 삼리면, 해면, 서촌면, 상면, 하무산면, 석막면, 청하면 중 청진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회령군 관해면

이 가운데 부천군은 부평군의 이름을 바꾼 것이고, 의주군은 의주부를 신의주부로 변경한 후 붙인 이름이며, 고양·용강군은 기존의 군 영역에 부의 면 지역을 합한 경우이다. 그밖에 옥구·무안·달성·동래·창원·대동·덕원·부령군 등이 새로 신설한 군들이다.

다음으로 폐합된 군은 121개 군으로 각 도별로 보면, <표3> 과 같다.

<부표3> 폐합된 군

도	군명
경기	교동, 양성, 양천, 과천, 양지, 부평, 남양, 풍덕, 죽산, 안산, 삭녕, 통진, 영평, 마전, 교하, 음죽, 적성 등 17개 군
충북	청안, 청풍, 영춘, 연풍, 청산, 황간, 문의, 회인 등 8개 군
충남	정산, 대흥, 신창, 평택, 직산, 회덕, 진잠, 은진, 연산, 석성, 노성, 온양, 전의, 한산, 임천, 홍산, 남포, 비인, 오천, 결성, 태안, 해미, 면천, 덕산, 홍주, 목천 등 26개 군
전북	진산, 용담, 고산, 용안, 함열, 여산, 임피, 만경, 태인, 금구, 고부, 무장, 흥덕, 운봉 등 14개 군
전남	창평·홍양·동북·능주·남평·돌산·지도·정의·대정 등 9개 군
경북	하양, 신녕, 장기, 연일, 흥해, 청하, 영해, 의흥, 비안, 영천, 풍기, 순흥, 예안, 진보, 자인, 현풍, 인동, 금산, 지레, 개령, 함창, 용궁 등

	22개 군
경남	거제, 용남, 곤양, 단성, 안의, 초계, 삼가, 영산, 언양, 기장 등 10개 군
강원	고성, 금성, 평해, 안협 등 4개 군
황해	연안, 배천, 토산 등 3개 군
평남	상원, 순안, 숙천, 영유, 증산 등 5개 군
평북	의주부, 가산·곽산군 등 3개 부·군

위 표를 보면, 주로 경기도와 삼남지방에 집중되었으며 함남과 함북은 폐합된 군이 없었다. 그 결과 경기도 20군, 충북 10군, 충남 14군, 전북 14군, 전남 22군, 경북 23군, 경남 19군, 황해 17군, 평남 14군, 평북 19군, 강원 21군, 함남 16군, 함북 11군으로 개편되었다.

2-4. 면의 통폐합

군의 폐합이 끝난 다음 4월 1일부로 면 폐합이 실시되었다. 총독부 당국은 면의 역할에 주목하여 면을 통해 지방행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면의 폐합은 도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도장관이 폐합을 조사 결정한 후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했는데, 면 폐합의 기준으로는 면적·지세 및 역사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면 폐합에 대하여 경기도장관 檜垣은 유고문을 통해, 경계가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犬牙錯綜)하고 面費·戶口·資力 등의 차등이 심하여 면민의 부담이 많고 유지에 힘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설을 통일하여 면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면 경비의 재원을 풍부하게 함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또한 총독부 지방국장 小原은 종전의 면은 면적호수의 차이가 심하여 가장 큰 면은 179 방리 내지 150 방리에 이르고, 가장 작은 면은 1 방리 약 3분1에 불과한 곳도 있으며, 호수에서도 큰 면은 7천 4백호에 이르고 작은 면은 83호만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약 8백호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초과하는 면은 존속시키고, 이에 미달하는 면은 폐합할 계획이며 면적 4 방리 이상의 면 또는 지세·교통 등 관계상 폐합하기 어려운 면은 표준에 미달하더라도 존치시켰다고 밝혔다.

<표4> 통폐합 전후 면의 도별 평균 면적 및 호수

(단위 : 방리, 호)

구 분	면 적	호 수
-----	-----	-----

	전	후	전	후
경기	1.6	3.1	688	1,100
충북	2.5	4.3	685	1,198
충남	1.4	3.2	538	1,190
전북	1.4	2.9	578	1,158
전남	2.1	3.4	793	1,277
경북	2.1	3.9	702	1,296
경남	1.7	3.0	711	1,180
황해	3.4	5.3	700	1,077
평남	3.5	6.2	684	1,128
평북	8.0	10.7	775	1,032
강원	8.4	11.1	793	1,051
함남	9.9	13.2	1,007	1,310
함북	8.9	13.8	664	1,013
계	3.3	5.7	705	1,164

2-5. 정·동·리 통폐합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1918년 토지조사 종료 시까지 완료

3-1. 개편의 결과

<표5> 각도별 면적·호수 및 부·군·면의 통폐합 전후의 개수

구분	면적	호수	부		군		면	
			전	후	전	후	전	후
경기	771	334,883	2	2	36	20	487	250
충북	490	136,291	-	-	18	10	199	114
충남	552	208,292	-	-	37	14	387	175
전북	539	219,639	1	1	27	14	380	188
전남	932	354,263	1	1	28	22	447	275
경북	1,061	360,822	1	1	40	23	514	272
경남	779	322,234	2	2	27	19	453	259
황해	1,192	243,501	-	-	19	17	348	226

평남	1,049	204,621	2	2	17	14	299	169
평북	2,080	201,597	1	1	20	19	260	194
강원	1,980	187,106	-	-	25	21	236	178
함남	1,876	191,309	1	1	13	16	190	142
함북	1,088	81,028	1	1	10	11	122	79
계	14,389	3,045,586	12	12	317	220	4,322	2,521

군 통폐합의 결과 1군 평균면적은 45방리에서 65방리로, 호수 평균은 8,957호에서 13,412호가 되었다.

면 통폐합의 결과 면적에서는 종전 전국 평균 3.3 방리에서 5.7 방리로 확대되었고, 또한 도별로 보면 이전에는 최소 1.4(충남·전북)에서 최대 9.9(함남)로 7.1배의 편차를 보였는데, 통폐합 이후에는 최소 2.9(전북)에서 최대 13.8(함북)로 그 편차는 4.8로 좁혀졌다. 호수에서도 종전 705호에서 1,164호로 증가되었으며 도별로 볼 때 이전에는 최소 538(충남)에서 최대 1,007(함남)로 그 편차는 1.87배였으나, 이후에는 최소 1,013(함북)에서 최대 1,310(함남)으로 1.29로 좁혀졌다.

총독부 관계자는 면 통폐합의 결과에 대하여 종래의 면의 평균 면적이 3.3 방리에서 5.7 방리로 되었으며 호수는 평균 102호에서 1,118호로 되었고 종전 면의 지세액(국세)은 평균 1,574원이었으나 폐합의 결과 2,697원이 되어 면의 資力은 견실하고 면민의 부담은 경감되었다고 자랑하였다. 또한 면수의 감소로 지도감독의 주도를 기할 수 있게 되었고, 면비 336,000여 원이 감액되었으며, 면적·호구 등에서 종래의 현격한 차등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면 부과금 중 1호당 부담액이 1913년도의 97전 9리에서 1914년도에는 76전 5리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1910년대 면경비(세입 및 세출)의 연도별 상황에 의하면, 1914년의 호구세와 토지세는 전 해에 비하여 각각 66,915원과 499,812원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면비의 감액 및 1호당 부담액의 감소는 면동리의 폐합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폭적인 절감에 기인한 것인데, 실제로 면장수장 및 면서기 급료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세출이 1913년 2,535,064원에서 2,071,245원으로 463,819원 줄어들었다.

3-2. 의미: 지방 장악

- 1904년부터 1910년까지는 중앙 장악 과정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에 체결한 '한일의정서'는 일제의 한국

침략 야욕이 겹으로 드러난 첫걸음이었다. 이어 반년 후에는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한국 정부에 파견했다. 러일전쟁 승전 이후에는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을 半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어 1907년에는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차관 이하 요직에 일본인 관리를 심어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이르러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식민지 조선 지배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제가 한국의 ‘중앙’을 장악해가는 과정이었다.

- 지방행정구역 개편 결과 지방 장악

‘지방’은 조선 민중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자 쌀을 비롯한 1차 산업의 생산물이 나오는 곳이며 공업제품이 소비되는 곳이었다. 또한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식민지가 식민 본국에 대해 식량과 원료의 생산지, 상품의 소비시장, 나아가 잉여자본의 투자처로서 기능함에 비취볼 때 ‘지방’은 일제가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었다.

- 조선 전래의 기층 자치조직은 상당한 타격

동리 통폐합 결과 조선 전래의 공동체적 기층 자치조직은 타격을 받았다.

4-1. 1914년 평택지역 행정구역 개편

1914년 3월 1일자로 실시된 진위군의 통합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진위군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진위군	평택	진위군 일원 수원군 종덕면 율북면 수북면 토진면 서신리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언북면 포내면 현암면 안외면 승량면 가사면 광덕면 충청남도 평택군 일원

진위군을 주체로 하고, 경기도 수원군의 15면, 충남의 평택군을 아울러 새로운 진위군이 탄생한 것이다. 군청은 평택에 그대로 두면서 군의 명칭을 진위군으로 한 것은 경기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은 충

남에 속했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군 명칭에 평택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 때문이 아닌가 하고, 또 평택군을 사용할 경우 원 진위군 거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8년 10월 1일자로 평택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2. 1914년 이전 평택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령 제2호를 통해 평택군 면의 구역이 변경(1912.11.2.)되었다. 6면을 3면으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면의 內里, 東倉里 및 북면 각 동리를 읍내면으로 편입
 읍내면의 軍勿里, 上宮리, 남면의 大沙동, 石橋리, 西斤리를 동면에 편입
 남면의 鞍峴리, 西亭子리, 松中리, 松下리, 開花리, 月井리, 斗谷리, 老上리, 老中리, 新成리, 老下리 및 慶陽면 각 리를 서면에 편입
 북면, 남면, 경양면을 폐함.

동시에 조선총독부 충청남도 고시 제19호로써 평택군 면 내 동리 구역 및 명칭 변경(1912.11.2.)이 있었다. 그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표7> 평택군 면 내 동리 구역 및 명칭 변경

면명	구역 및 명칭		적요
읍내면	新洞리	舊洞리	
	客舍리	객사리	
		大井리	
		上新垈리	
		하新垈리	
		校村	
	頭村	樓村	일부 近乃洞으로부터 편입
		頭里	
	新宮리	新興리	일부 新虎리로부터 편입
		下宮리	
	倉越리	倉越리	
	新德리	新德리	
	內리	內리	일부 동면 大秋리로부터 편입 <추팔리>
	東倉리	東倉리	
近乃洞	近乃洞	일부 頭村에 편입	

	石峯리	黑石리	
		院峯리	
	新換浦리	新換浦리	
	院井리	院井리	
	新虎리	新리	일부 新宮리에 편입
		虎峙동	
	舊倉리	舊倉리	
동면	南山리	南山리	
	老瓦리	老連리	
		瓦也동	
	秋八리	秋八리	일부 읍내면 내리에 편입
	坪宮리	上坪리	
		上宮리	
	軍勿리	軍勿리	
	大沙동	大沙동	
	石斤리	石橋리	
	西斤리		
서면	咸井리	咸登리	
		京井리	
	大秋리	大秋리	
	安亭리	鞍峴리	
		西亭子리	
	松花리	松中리	
		松下리	
		開花리	
	斗井리	斗谷리	
		月井리	
	老成里	老上리	
		老中리	
		新成리	
	老陽리	老下리	
		仁處리	
	本井리	本堰리	
		鯨井리	
棹頭리	棹頭亭리		
新垈리	新垈리		

4-3. 이후

1914년 3월 1일자로 진위군으로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후 1914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8호로써 충남 천안군 성환면 水浦里를 진위

군 內南面에 편입(8월 1일 시행)했다.

그리고 동리 통폐합이 실시되었는데, 1915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5호를 통해 진위군 면내 동리의 명칭 및 구역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표8> 진위군 면내 동리의 명칭 및 구역

면	명칭 및 구역
북면	鳳南리 葛串리 淸湖리 古峴리 東泉리 佳谷리 新리 下北리 見山리 馬山리 銀山리 野幕리
서탄면	寺리 水月峯리 奈川리 金峯리 馬頭리 檜花리 赤峰리 長登리 金角 리 黃口池리
송탄면	芝山리 獨谷리 新場리 西井리 獐堂리 二忠리 長安리 佳才리 道日 리 七院리 七槐리 茅谷리
고덕면	海昌리 坐橋리 栗浦리 余染리 宮리 防築리 東古리 堂峴리 杜陵리 文谷리 東淸리
병남면	芝制리 細橋리 新垈리 通伏리 平澤리 軍門리 柳川리 蛤井리 碑前 리 東朔리
청북면	三溪리 高棧리 土津리 魚沼리 玄谷리 栗北리 閑山리 魚淵리 柏峰 리 龍城리 德佑리 玉吉리 後寺리
포승면	洪原리 道谷리 遠井리 石井리 內基리 芳林리 晚湖리 希谷리 新榮 리
현덕면	德睦리 大安리 新旺리 斗梅리 權管리 岐山리 華陽리 仁光리 道垈 리 黃山리 防築리 雲井리
오성면	梁橋리 竹리 宿城리 安化리 堂巨리 倉內리 新리 橋浦리 金谷리 大盤리 吉音리 三井리 安仲리 鶴峴리
부용면	신궁리 두리 객사리 평궁리 추팔리 노와리 석봉리 신호리 근내리 원정리 동창리 내리
서면	함정리 대추리 안정리 송화리 석근리 두정리 노성리 대사리 탁두 리 신대리 본정리 노양리 남산리

위 표를 보면, 1914년 3월 1일 진위군에 통합된 옛 평택군의 면은 3개 면이었는데, 이때 다시 2개 면으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읍내면과 동면이 부용면으로 통합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서면 관할로 변경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동·리 통폐합에 대해 북면 봉남리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주막리 등 7개 마을이 봉남리로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동·촌 등의 명칭도 리로 통일되었다.

<표9> 북면 봉남리의 통폐합

면	명칭 및 구역	구 명칭 및 구역	적요
북면	鳳南里	酒幕里	
		晩村	見山里에 편입한 殘部
		西門里	
		玉巨里	
		牙谷	
		新塘里	
		校村里	

4-4. 1920년대 경기도 내 진위군의 위상(郡勢)

1922년 조선총독부 경기도가 편찬한 《경기도사정요람》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는 면적 830방리 69에, 2부 20군 249면 2730정동리가 있었다. 1910년 강점 당시 2부 36군 495면에서 16개 군과 246면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내 각 부·군의 위치와 면적, 면·동·리수는 다음과 같다.

<표10> 경기도 내 각 부·군의 위치와 면적, 면·동·리수

군명	군청위치	면적(방리)	면수	동리수
고양		30.72	12	155
광주		49.81	16	183
양주		63.03	16	148
연천		52.74	13	111
포천		53.17	12	88
가평		46.16	6	47
양평		65.62	12	112
여주		41.68	10	159
이천		29.90	11	132
용인		41.07	12	115
안성		35.14	12	170
진위	병남면 군문리	26.36	11	128
수원		56.78	21	277
시흥		24.54	10	83
부천		34.37	15	146
김포		25.14	9	88

강화		27.32	14	96
파주		28.39	11	84
장단		46.83	10	67
개성		49.17	16	104
소계		827.94	249	2493
평균		41.40	12.45	124.65
경성		2.34		186
인천		0.41		51
계		830.69	249	2,730

위 표를 보면, 진위군의 면적은 경기도 각군 평균 면적 41.4에 못 미치는 26.36방리이다. 진위군 보다 좁은 군은 시흥, 김포 2개 군으로 진위군은 면적으로 볼 때 경기도 내에서 18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 중 3.17%이다. 면수는 평균보다 약간 작고, 동리수는 평균보다 약간 많다.

다음으로 인구수를 살펴보면, 1925년 국세조사 결과 경기도 인구는 2백 1만 9천 108명인데, 진위군은 6만 9천 424명으로 3.4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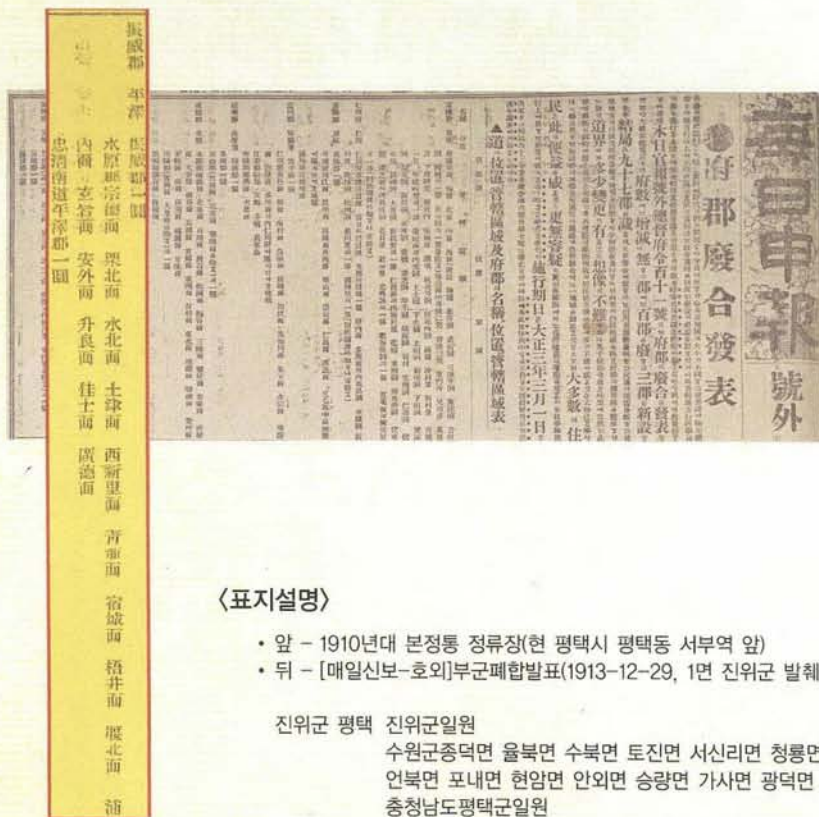
* 이 글의 1~3장은 최재성의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성격>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신서원, 2003)과 <일제의 조선 지방지배정책과 수원> (《수원학연구》, 수원학연구소, 2005)에서 발췌 작성하였음.

MEMO

MEMO

MEMO

MEMO



<표지설명>

- 앞 - 1910년대 본정통 정류장(현 평택시 평택동 서부역 앞)
- 뒤 - [매일신보-호외]부군폐합발표(1913-12-29, 1면 진위군 발체)

진위군 평택 진위군일원

수원군종덕면 울북면 수북면 토진면 서신리면 청룡면 속성면 오정면
 언북면 포내면 현암면 안외면 승량면 가사면 광덕면
 충청남도평택군일원



평택문화원
 Pyeongtaek Cultural Center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Tel.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